

의안번호	2215919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6.6.29.
추계번호	26B0093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5,000만원 등 향후 5년간 12억 5,000만원(연평균 2억 5,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개발계획의 집행 등 (안 제8조)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광역권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개발계획의 입안 등)	개발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광역권 개발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 (개발계획의 집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한다.(제2항)	의무규정
	안 제10조 (임시허가 및 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중 등을 위한 특 례 지원)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2항)	
4	안 제17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개발계획 수립주체가 개발계획 및 제25조에 따라 체결한 광역권발전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18조 (금융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개발계획 수립주체는 거점지구 내 입주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9조 (조세에 대한 특 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교육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20조 (부담금 등의 감 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하천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26조 (광역권발전협약 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25조에 따라 체결한 광역권발전협약의 내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에 따른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의무규정
9	안 제28조 (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	광역권발전협약 체결주체는 제25조에 따른 광역권발전협약의 체결 및 제27조에 따른 광역권발전협약의 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29조 (전문기관의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광역권의 지정에 관한 업무 2.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결정에 관한 업무 3. 제8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핵심사업의 선정에 관한 업무 5. 제25조, 제27조에 따른 광역권발전협약의 체결 및 이행관리 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재량규정
11	안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현행법과 제정법 조문 비교

- 제정안과 현행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조문 중 중복되는 조문은 추계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법 비교표

연번	제정안	현행법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	안 제6조(개발계획의 입안 등)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표 3] 조문별 비용추계현황 및 추계 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8조 (개발계획의 집행 등)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2	안 제10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 지원)	×	• (제3호)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여부, 지정 기관, 인력·조직 규모, 운영비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 등이 대통령령 또는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 현시점에 센터 운영방식 및 지원대상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17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	• (제3호)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개발계획 및 광역권발전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의 사업 범위와 규모가 불확정적이고 인상보조율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18조 (금융 지원)	×	•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금융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 신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보증재단 등이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 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입주기업 수, 용자·보증 규 모 등이 현 단계에서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 로 산출하기 어려움
5	안 제19조 (조세에 대한 특례)	×	•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입주기업에 대 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수입감소가 예상 되나, 감면대상 세제, 감면 비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수입감 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20조 (부담금 등의 감면)		
7	안 제26조 (광역권발전협약에 대한 지원)	×	• (제3호) 광역권발전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 계,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의 예 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협약 체결 대상 광역권 수, 협약에 포함될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 모, 회계별 지원규모, 국비·지방비·민자 분담구조 등이 확정 되어 있지 않고, 추진협의체의 설치 여부, 구성원 수, 회의 개 최 횟수, 수당·여비 지급 여부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 이므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 계가 있음
8	안 제28조 (광역권발전협약 추 진협의체)		
9	안 제29조 (전문기관의 지정)	×	• (제3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광역권 지정, 개발계획 결정·평 가, 핵심사업 선정, 광역권발전협약 체결·이행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게 하고, 위탁업무 수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문기관 지정 여부, 위탁 업무 범위, 업무량, 위탁비 산정기준 및 지원규모가 확 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10	안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 무의 위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을 참 고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8조)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개발계획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권의 수, 평가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불확정적이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비용을 추산함

- (유사사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평가 사업(지역개발사업평가운영, 사업코드 5547-304)
 - 인건비(134백만원), 직·간접 경비(63백만원), 외주사업비(30백만원 등) 등 250백만원
- (추계방법) 유사사례 사업비 250백만원을 추계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유사 지역개발사업 평가 사업예산 현황: 2024~2026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요기관	근거법령	2024년	2025년	2026년
지역개발사업평가운영 ¹⁾ (5547-304)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6조	200	200	25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일부추계)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개발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1) 사업목적: 국토의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계획 및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집행평가 등을 실시, 과도한 지역개발계획·단위사업 제척·조정 등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효과성 증대 도모

○ 일반연구비(260-01) : 250백만원

가. 인건비 134백만원

- 책임연구원 1명 29백만원, 연구원 5명 57백만원, 연구보조원 3명 48백만원

* 기재부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나. 직·간접 경비 63백만원(여비, 전문가자문회의, 연구진 회의비,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개발사업 평가 및 공모사업 지원 등)

다. 외주 사업비 30백만원(기반시설 타당성 평가 유발교통수요분석)

라. 부가세 23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개발계획 집행평가	250	250	250	250	250	1,250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